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희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42
----------	------

발의연월일 : 2024. 3. 5.
발의자 : 문희성, 박경흠, 김태욱,
홍영진, 이명녀, 정재환,
김도운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 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의결을 받을 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의정활동비 등(안 제2조)

-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0,000원 → 월 1,200,000원
-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 → 월 300,000원

나.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안 제3조의2) 제2항, 제3항 신설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00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4. 2. 28. ~ 3. 4.(5일간) / 의견 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월9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200,000원”을 “월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300,000원”으로 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정활동비”를 각각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지급액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정활동비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u>월900,000원</u>과 보조활동비 <u>월200,000원</u>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별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p> <p>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의정활동비</u>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u>의정활동비</u>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p> <p><u><신 설></u></p>	<p>제2조(의정활동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월1,200,000원</u>과 보조활동비 <u>월300,000원</u> ----- -----.</p> <p>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 ----- ----- <u>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u> ----- . - ----- ----- ----- <u>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u> ----- .</p> <p>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p>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지급액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 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 되더라도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3. 작성자

- 소 속: 의회사무국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이 름: 이 원 석
- 연락처: 290-4244